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체크리스트

- 1 혼인기간 7년이내인 자**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 2 소득기준 충족**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이어야 합니다.
-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 4 공동인증서 발급 필수** - 청약접수일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 120% 이하	6,030,161원 ~ 7,236,192원	7,094,206원 ~ 8,513,046원	7,094,206원 ~ 8,513,046원	7,393,648원 ~ 8,872,376원	7,778,024원 ~ 9,333,628원	8,162,400원 ~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 140%이하	6,030,161원 ~ 8,442,224원	7,094,206원 ~ 9,931,887원	7,094,206원 ~ 9,931,887원	7,393,648원 ~ 10,351,106원	7,778,024원 ~ 10,889,232원	8,162,400원 ~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 160%이하	7,236,193원 ~ 9,648,256원	8,513,047원 ~ 11,350,728원	8,513,047원 ~ 11,350,728원	8,872,377원 ~ 11,829,835원	9,333,629원 ~ 12,444,837원	9,794,880원 ~ 13,059,838원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배정세대수	A-4블록 246세대 / A-9 블록 131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소득기준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1) 소득기준 ① 우선공급(70%): 소득기준 10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② 일반공급(30%): 소득기준 14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와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는 100%를 말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3)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또는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함.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